

제21회 가톨릭 '교회와 세상' 강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노동자, 시민

2021. 4. 21(수) 오후 7시~9시

명동가톨릭회관 2층강당(205-2호)

강연 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이상윤 대표(노동건강연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강연 2 '올바른 법 제정의 필요성과 산업재해 피해자 가족의 활동'

김미숙 이사장(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온라인 실시간 중계합니다(유튜브에서 '서울대학교 정의평화위원회'를 검색하세요)

문의 : 02-727-2249 / 02-924-2721



진주교 서울대학교 정의평화위원회



진주교 서울대학교 사회정책
노동시책위원회
Committee of Labor Ministry

사회교리 (주간) 기도문

사랑의 원천이신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복음의 빛으로 비추시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저희가 사랑의 새 계명을 실천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
모든 피조물과 창조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고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선을 이룸으로써
이 땅에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고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드러내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아버지,
(‘사회교리 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파견된 저희가
자신의 소명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참된 사랑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011년 사회교리 주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인준

제21회 가톨릭 ‘교회와 세상’ 강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노동자, 시민’

1. 일시: 2021년 4월 21일(수) 오후 7시~9시
2.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2층 강당(205-2호)
3. 주관: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노동사목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4. 대상: 관심 있는 신자 누구나 (온라인 유튜브 중계)
5. 내용

시간	내용
19:00~19:05	시작기도(하성용 신부)
19:05~19:50	강연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이상윤 대표(노동건강연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19:50~20:35	강연 2 ‘올바른 법 제정의 필요성과 산업재해 피해자 가족의 활동’ 김미숙 이사장(사단법인 김용균재단)
20:35~21:00	질의응답
21:00	마침 기도(하성용 신부)

6. 문의: 02-727-2249, 02-924-2721



진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노동사목위원회
Committee of Labor Ministry



진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강연 1>

기업 범죄와 중대재해 처벌법 : 정의(Justice) 측면에서의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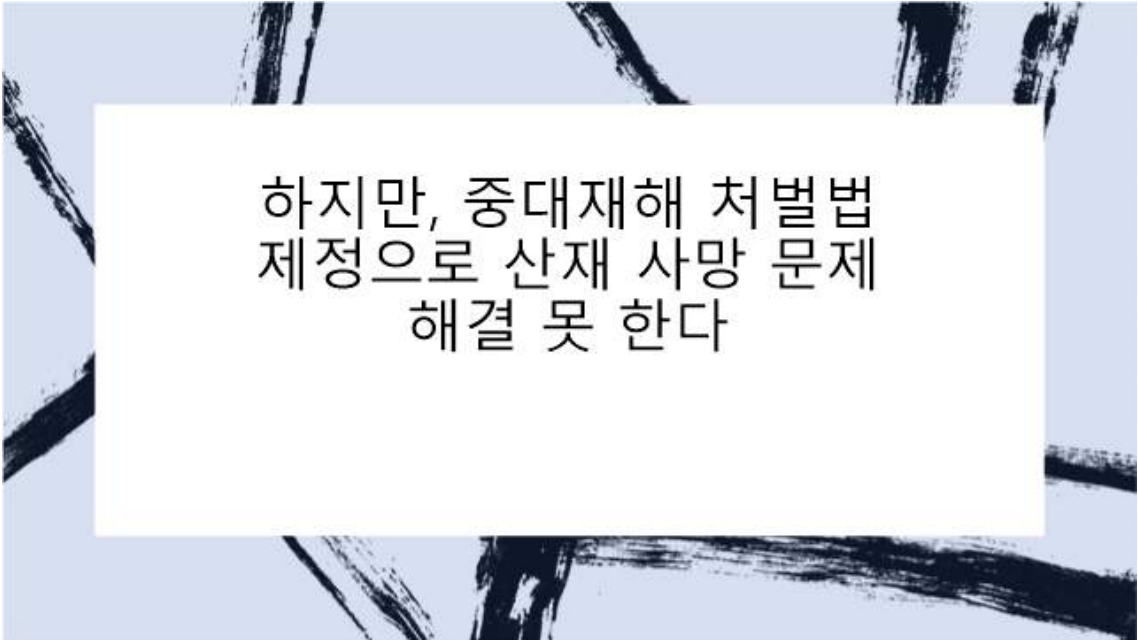
노동건강연대 대표
이상윤

교황님의 연설 중

-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장 권력 있는 자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거의 또는 전혀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특히 기업들의 대형 범죄"가 그러한데 이런 기업 범죄는 굶주림, 가난, 강제 이민, 예방할 수 있는 질병에 의한 죽음, 환경 재앙, 원주민 살해 등으로 이어지는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 지구적으로 움직이는 자본이 재산뿐 아니라 사람과 환경에 대한 중범죄의 원천"이라면서, 그것을 "조직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러한 초국적 자본이 여러 국가의 지나친 부채, 지구상 자연 자원의 약탈 등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 2019.11.15 교황님의 국제형법학회 총회 연설 중에서. 출처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http://www.catholicnews.co.kr>)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의 의미

- 산재사망은 운명, 부수적 피해, 노동자 개인 책임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태만과 부주의에 의한 살인이고 기업 범죄임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것
- 기업 경영책임자의 태만과 부주의에 의한 노동자 살인 행위에 대해 기업 경영책임자와 더불어 기업 자체를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업 범죄에 대한 사회적 대응 측면에서 비사법적 구제 방안과 더불어 사법적(형사적) 제재 수단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하지만,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으로 산재 사망 문제
해결 못 한다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
(만으로는)
산재 사망 문제 해결 못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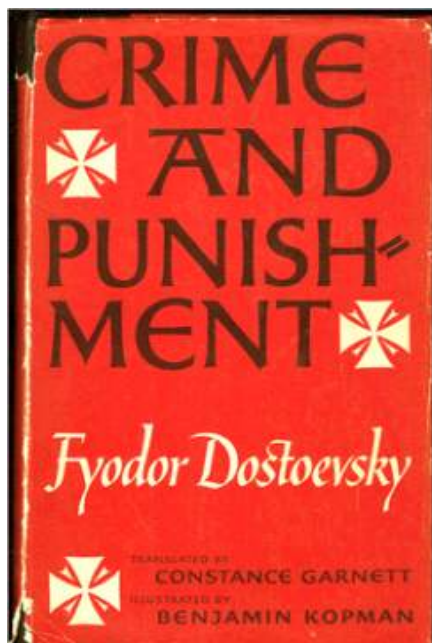
왜?

- 형벌의 목적
 - 응보
 - 일반 예방
 - 특별 예방



왜?

- 형벌의 효과에 있어 개인과 '조직'의 차이
 - 기업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
 - 조직 범죄, 기업 범죄에 대한 형벌 방식은?



왜?

- 범죄 예방은 “죄와 벌”의 프레임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과제가 존재
 - 사형 제도가 있다 하여 살인이 예방되나?
 - 노인, 아동 학대자를 강하게 처벌한다고 노인, 아동 학대가 사라질까?
 - 성폭력, 성추행 행위자를 강하게 처벌한다고 여성 폭력 문제가 해결될까?

왜?

- 산재사망 문제는 사회구조적 문제
 - 정치적 해법이 필요
 -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사회적 개입이 필요
 - 노동자의 조직 강화와 권리 강화가 필요



그러면 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기업살인법)
제정 운동을 벌이셨나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기업살인법)' 제정 운동의 의미

인식론적 충격, 전환을 위한 문제 제기

- 산재 사망 문제를 넘어 국가의 역할, 기업의 책임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한 수단
- 대중의 청동, 요구에 근거한 운동의 시작점

법 제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운동의 과정이 중요

-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대중적 동의 확보
- 당사자 개인, 유족, 단체 등의 활성화
- 형벌 강화 뿐 아니라 규제 강화, 근로감독 강화, 노동자 권리 강화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 근대적 의미의 국가의 역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의 기록제



프레임, 경로, 내러티브

- 프레임(fraime)
 - 시스템을 이해하거나 표현하기 위한 서로 다른 방식
- 경로(Pathway)
 - 모든 분석은 프레임을 필요로 하고, 모든 프레임은 어떤 요인을 강조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주관적인 판단과 가치가 개입
- 내러티브(Narrative)
 - 특정한 시스템 프레임은 종종 특정 문제나 이슈에 대한 내러티브 형태가 됨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 정 운동의 프레임 전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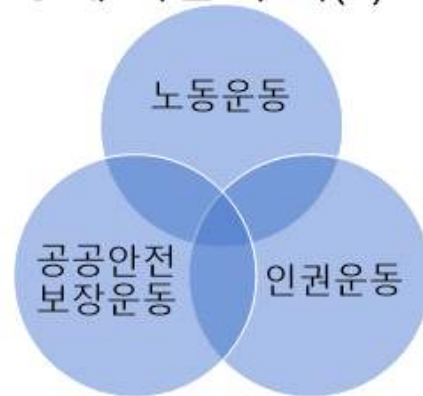
- 슬로건 : “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이다”
 - 산재사망을 운명, 부수적 피해,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일반적 시각에 대한 균열 내기
 - 산재사망은 “기업”의 문제이고 기업 경영 실패로 발생하는 것임을 대중적으로 설득
- 프레임 전환의 공통 기반
 - 산재 사망에 대한 윤리적인 정동 반응
 - 규범적 사회 정의에 대한 공통 인식, 감각
- 프레임 전환의 결과
 - “살인자를 처벌하라”
 - 노동자를 죽인 기업 및 최고 경영자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 형성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 정 운동의 성과

- 산재사망의 심각성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 형성
- 산재사망 문제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관심 증가
- 산재사망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 조성
 - 주체 형성
 - 우호적 여론 조성
 - 사회적 연대 구축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 성공에 따른 우려(1)

	사회권 운동 방식	노동 운동 방식
운동의 기반	특정한 사회적 기준, 규범	노동자들의 요구
최종 목표	법 제도 개혁	조직 강화
운동 수단	캠페인, 청원, 여론 형성	단체 행동, 정치적 협상
운동의 리더	당사자, 사회운동가, 정치인 등 개인	노동조합, 진보 정당 등 조직



특정 운동 방식이 지배적 경향이 되는 것은 경계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 성공에 따른 우려(2)

사회경제적, 정치적 문제를 사법화 하는 경향에 대한 거리두기 필요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 성공에 따른 우려(3)

-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이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자 안전 및 건강 정책 노선 채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압력 필요
 - 정부는 돈을 안 쓰고 일부 기업만 처벌하는 행태로 가서는 안 됨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자

노동자 안전 및 건강 문제의 성격



노동자 건강 문제는 '외부효과'가 아닌 특정한 생산양식 그 자체의 문제이다 :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이다



노동자 건강은 화학물질, 물리적 환경, 생물학적 요인 등 개별 유해인자'만'에 의해 파괴되는 것이 아니다



생산의 '구조'(사회적, 경제적, 정치적)가 노동자 건강에 중요하다

이념의 영향

사유재산, 시장에 대한 인식

정부의 개입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작업장 통제권 및 결정권의 배분 수준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

과학기술 혹은 전문성에 대한 태도 등

법, 제도, 국가의 역할이 중요

“국가란 무엇인가?”



표] 국가별 노동운동의 역할과 노동안전보건 수준의 비교

순위	노동운동의 역할	정책	노동자 참여	노동자 교육	안전보건 서비스 공급자	안전보건 서비스	정보 제공	국가재정 투입
10								
9	스웨덴	스웨덴	스웨덴	스웨덴	핀란드	스웨덴	스웨덴	
8		핀란드				핀란드		스웨덴
7	핀란드		핀란드		스웨덴		핀란드	핀란드
6		영국	영국	미국	독일	독일		
5	영국	독일		영국		영국		영국
4	독일		독일	핀란드	영국			
3		미국		독일	미국	미국	영국	미국
2	미국		미국					독일
1								

출처: Elling, Ray H(1986), 『The struggle for workers' health』에서 발췌.

노동자 안전과
건강 결정 요인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 이후의 운동은?

- "노동의 시민권 쟁취"라는 '근대적 과제' 해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시 자리 매김하기
- 공공안전 혹은 공공보건 관점에서 '기업'에 대한 정부/사회적 개입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기획의 일부로 기능
- 사회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치적 기획의 일부로 기능

중대재해 처벌법 얘기는
아예 안 하시나요?

중대재해 처벌법 얘기는 아예 안 하시나요?

영국의 기업살인법(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영국의 경우 기업살인법 제정 전에도 기업에 대한 과실치사죄 적용 가능했었음

- 경영책임자의 과실이 있으면 기업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시
- 소규모 기업만 기업 과실치사죄의 적용 받는 문제 발생

기업살인법 적용 방식

- 기업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영 실패가 있을 경우 기업을 처벌
- 새로운 점 : 특정 개인(주로 경영 책임자)의 과실 입증을 요구하지 않음, 경영관리상의 시스템 실패를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 : 대기업에도 이 법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 기업만을 처벌하는 것이지 개인을 처벌하지는 않음(최초 논의 법안에는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삭제됨)
- 양벌 규정 도입 : 최소 50만 파운드(한화 약 7억 4천 만원), 수백만 파운드 가능

법 자체의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

- 성과
 - 이번이 또 다른 기관의 경영책임자들이 죄를 뉘웠을 때 기업은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
 -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한계와 아쉬움
 - 한국에서 경영책임자의 범죄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적으로"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제의 입법 가능성은 매우 낮음 확인
 - 기업 처벌 방식의 다양성 측면에서 논의되었던 영업정지, 기업 영업 불능, 대표관할, 사회봉사명령 등에 대한 제도는 포함되지 못했다
 - 이 법으로 과연 법인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 : 범죄 입법의 문제
 - 법 제6조 중에서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향후 과제
 - 검찰 내 기업범죄 전담 기구의 신설
 - 기업의 노동자 살인 행위에 대한 지속적 여론화 작업 필요

감사합니다

<강연 2>

올바른 법 제정의 필요성과 산업재해 피해자 가족의 활동

김미숙 이사장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1. 첫 직장 제대로 된 안전교육 없었다.
 - 안전교육 상실, 조도, 2인 1조, 위험한 회전체 노출
2. 회사가 유족을 대하는 부당한 태도
 - 사과논커녕 아들이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고 했다.
(확인되지 않는 말 인정할 수가 없었다)
3. 은폐된 사고 현장
 - 사고를 당한 유족이 왜 사고 증거를 찾아야 하나?
(안전줄 풀 코드, 물청소. 국가기밀이라 사진이나 촬영이 안 됨)
4. 참담한 사고처리 과정
 - 짐승만도 못한 아들 시신처리
(사고 추정시간 4시간 후 시신발견 그리고 또 4시간 방치하다 오전 7시 태안의료원으로 안치)
5.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 거의 모든 산재는 본인의 잘못으로 죽는 것이 아니다.
(재래식 사망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
6. 경찰,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 자체적으로 무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7. 특별조사위원회
 - 업무수칙, 구조적 문제
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필요성
 - 해마다 2,400명 산업재해 사망
 - 수많은 시민재해

9. 반쪽짜리 법 통과 과정

- 10만 입법청원
- 단식
- 국회의원들의 태도
- 법사위 전체 회의
- 내가 느낀 점

10. 현재 재계의 태도

- 경총을 포함한 경제 단체들이 법취지를 무력화시키려.

11. 사단법인 김용균 재단

- 비정규직 철폐 활동
- 청년노동자 권리보장
- 연대 활동
- 추모사업
- 위험의 외주화 금지
- 산업재해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활동

(용균이 엄마로서의 대표성은?)

(네트워크 “다시는” 사회의 부당함을 바꾸는 단체 활동, 사고가 날 때마다 유족을 만나 힘이 되도록 지원)

12. 김용균 재판(대전지법 서산지원)

- 원하청 법인을 비롯해 실질 책임자들 14명 기소

(준비 공판 2번, 본 재판 3번, 원하청 서로가 책임지지 않으려 함)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정의평화위원회 소개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인류의 대부분을 괴롭히는 재앙이 아직도 많음을 생각하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정의와 사랑을, 가는 곳마다 장려하기 위하여, 그리고 빈곤한 지역들의 발전과 민족들 간의 사회정의를 촉진하도록 가톨릭 공동체를 격려하기 위하여”(사목헌장 90항) 보편 교회의 한 기관을 설립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교황 바오로 6세는 1967년 1월 6일에 사도적 서한 ‘Catholicam Christi Ecclesiam’을 반포하여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서울대교구도 1984년 12월 18일에 정의평화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정의평화위원회는 노동, 경제, 환경문제를 비롯하여 한반도, 동북아 평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연구하고 연대합니다. 공적인 논의를 통해 인권 문제를 쟁점화하고, 인권탄압의 희생자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모색합니다. 사회사목국 모든 위원회와 기관들의 활동이 곧 정의평화위원회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평신도, 수도자, 사제들을 대상으로 가톨릭 사회교리를 교육하고 보급하는 일은 정의평화위원회의 핵심 사명 중 하나입니다. 1995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사회교리학교’는 정규과정(기본, 응용)에 3,900여 명이 이수하였고, 각 본당에 찾아가 실시하는 ‘본당 사회교리학교’는 5,300여 명이 이수하는 등 그동안 총 9,400여 명이 사회교리학교를 이수하였습니다. 사회교리 강사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매년 12월에 개최하는 ‘사회교리주간’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사회교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 목적: 복음과 사회교리에 비추어 정의와 평화를 증진
- 광범위한 연대: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가톨릭교회 내 모든 단체와 연대 활동, 인권신장, 정의·평화·창조질서보전(JPIC) 실현을 위한 연대와 협력
- 간행: 사회현안에 대한 교회 가르침, 서울 정의평화위원회와 세상, 사회교리주간 교육 자료집 발간 등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정의평화위원회
04537 서울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20호
전화 02)727-2431, 팩스 02)773-1051
E-mail: jupecas@catholic.or.kr
홈페이지 www.catholicjp.or.kr



서울대교구청평위